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3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허성무 · 김 윤
임호선 · 김영환 · 조정식
이주희 · 김남희 · 소병훈
이학영 · 이수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.

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).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3(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·연령·지역·소득·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민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간 건강격차 현황을 3년마다 조사·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조사·분석의 내용·방법과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4(건강영향평가) ①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신체·정신·사회·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 신체·정신·사회·환

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항목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9조의3(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·연령·지역·소득·교육수준 등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국민 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 간 건강격차 현황을 3년마다 조사·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제3항에 따른 조사·분석의 내용·방법과 공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9조의4(건강영향평가) ① 국가</u></p>

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때 신체·정신·사회·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 신체·정신·사회·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평가의 항목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